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9. 16(금) 10:00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 호
- 나. 제 출 자 : 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9. 6.
- 라. 회부일자 : 2022. 9. 6.

2. 개정이유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요건을 명확히 하고, 다른 조례에 의한 보훈관련 수당 수급자에게도 우리구 수당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 나. 보훈예우수당 지급 1년 이상 거주조건 삭제(안 제8조제1항)
- 다. 보훈예우수당 중복지원 금지 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 라.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안 제9조제1항, 제3항)
- 마.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목적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규정 삭제(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3조
- 나. 예산조치: 예산팀과 협의
-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개정 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훈관련 수당의 중복 지급 금지를 삭제하여 우리구 수당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1) 국가보훈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단체의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

2) 보훈예우수당 지급 1년 이상 거주조건 삭제(안 제8조제1항)

- 지급 조건이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써 이 조례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삭제가 타당하다 봄

3) 보훈예우수당 중복지원 금지 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19. 3. 28)으로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여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등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 자치구

8개구(용산, 성동, 중랑, 도봉, 마포, 구로, 영등포, 강동)

4)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안 제9조제1항, 제3항)

- 사망 유공자 위로금 지급을 그 유족에게로 변경함

5)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목적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규정 삭제(안 제11조)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 중복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지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해당 조항 삭제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개정안으로 인해 추가되는 예산부담이 매우 크다고 보며 이에 따른 집행부의 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2022.6 현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 3,627명 (중복제외 2,485명)

구분	계	독립유공자 (유족)	전공상 군경	유족	미망인	무공 보국수훈 자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	월남참 전유공 자	6.25참 전유공 자	고엽제 후 유 (의)증 환자
인원	3,627	26	391	299	221	434	15	940	278	1,023

○ 금천구수당, 서울시수당 총 지급인원수 : 1,985명

-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 22.6 기준 1,235명
-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 22.6 기준 750명

참전명예수당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보훈예우수당	계
1,047	7	110	71	750	1,985

○ 보훈예우수당 미신청자 : 500명(2,485명 - 1,985명)

○ 조례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 중복지급시 추가 예상인원 : 1,735명

-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 1,235명
- 보훈예우수당 미신청자 : 500명

○ 내년도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인원수 : 2,485명

- 서울시수당 1,235명 + 보훈예우수당 미신청자 500명 + 구 보훈예우수당 수령자 750명

○ 내년도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2,485명 - 현재 예산서상 보훈예우수당 인원 1,100명 = 1,385명 추가

- 1,385명 x 5만원 x 12개월 = 8억3천1백만원 추가소요
- 약1400명 추산시 : 1400명 x 5만원 x 12개월 = 8억4천만원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5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